

공사 입찰 공고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공고 제2026-0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4.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1. 입찰개요

가. 공 고 명: 2026년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친환경기반구축사업 친환경미곡처리장 신축공사(저온저장고)

나. 공 사 내 용: 친환경미곡처리장 신축공사(저온저장고)

다. 공 사 현 장: 강화군 송해면 신당리 452

라. 공 사 기 간: (종합) 착공일 ~ 2026. 11. 30

마. 발 주 금 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합계(추정금액)	기초금액
507,620,000	50,762,000	-	558,382,000	558,382,000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금558,382,628원

(단위:원)

건축	합계(추정금액)
507,620,000	507,620,000

사.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불허, 실적 - 3년 이내 5억 이상(지자체 및 국가사업 공사로 저온저장고 건축 5억 이상 / '26년 발급 문서 기준 / 단일 계약 건), 가격 투찰 후 실적심사, 공동도급 불허 /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제외

아. 하자기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주된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에 따름)

자. 기타사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결정방법: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을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강화군 송해면 신당리 452,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2) 연락처

-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dmzl2121@naver.com)
- ② 설계서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dmzl2121@naver.com))
-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611,950	1,867,200	241,800	1,573,500	6,900,000	1,500,000	0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불허사유 : 본 공사는 가설공사, 토공 및 지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돌공사, 타일공사, 목 및 수장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식재공사, 포장공사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설계내용,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회 없음

나. 설계서 나라장터 확인 필요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7. 17:30 ~ 2026. 8. 18. 15:00

③ 재입찰 : 허용하지 않음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8. 18. 16: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pm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천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입찰공고일 현재용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대상 업종

구분	업종명
공사	건축공사업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6>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	111.36%	135.45%

※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12>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14>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 적용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⑥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⑦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⑧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치 못할 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⑨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고,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통보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을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사정 등으로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아.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은 본 계약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자.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카.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은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시행 2025.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참조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u>매월</u> 일	<u>매월</u>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년 월 일

발주기관 :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대라이스유타영농조합법인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현대라이스유타영농조합법인 귀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귀하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약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귀하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00지구 00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TBM 실시계획

-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 1) 교육 실시 시점:
- 2) 교육 내용:
-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 4) 건설기계 운전자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 1) 지급 보호구 종류:
- 2) 착용 확인 방법:
-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 1) 설치 위치, 개수:
- 2) 주요 표출 내용:
-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약속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